

# 회비규정

2023년 3월 25일 제정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(이하 “단체” 라 한다) 회비 등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.

## 제3조 (회비의 종류)

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개인회원 회비: 이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## 제4조 (회비 금액과 납부 시기)

- ① 회비는 월회비 또는 연회비로 납부 가능하다.
- ② 월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, 연회비는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정기총회 시기 운영위원회에서 안내한 기간에 따라 납부한다.
- ③ 월회비 기준 회비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, 연회비 금액은 월회비 금액의 12배와 같다.

1. 개인회원 회비: 매월 1만원

## 제5조 (회비 감면)

-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별도의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회비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.
  1. 미성년자 및 만 29세 이하 학생의 경우 최대 90%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.
  2. 그 외 납부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거나 본인의 재무능력으로 회비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, 최대 75%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.
- ② 감면된 금액은 다음 해의 1월 말일까지 적용되며, 계속해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받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면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.

## 제6조 (납부 방법)

회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1. 계좌 이체
2. 단체가 정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
3.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정하는 방법을 통한 납부

## 제7조 (보고)

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및 신규회원 현황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8조 (기타 사항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#### 제9조 (개정)

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